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 서 울 고 등 법 원

|                   |   |
|-------------------|---|
| 2002. 5. 14. 판결선고 | ⑨ |
| 2002. 5. 14. 원본영수 |   |

## 제 6 특 별 부

### 판 결

사 건 2001누23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원고, 피항소인 참여연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변 론 종 결 2002. 4. 9.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1. 10. 선고 99구7708 판결

### 주 문

-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피고가 199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목록 2.기재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패소부분인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4.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련의 목적을 들어 별지 목록 기재 5개 항목 및 1970.부터 1999. 9.까지의 매년 설비비 수입내역과 총 누적액, 같은 기간의 매년 유선 전화가입 회선수와 연도별 누적치 등 7개 항목에 관한 정보 일체를 사본,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같은 해 11. 5. 별지 목록 기재 5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2개 항목에 관한 정보는 이를 공개하였으나, 별지 목록 기재 5개 항목에 대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



다가, 제1심 계속 중에 별지 목록 기재 5개 항목 중 순번 3. 내지 5.의 3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다.(이하 당초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위와 같이 공개되고 남은 별지 목록 1., 2. 기재의 2개 항목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는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광 제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와 피고가 각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 가.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

(1) 피고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국민'에는 자연인, 법인 등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해당되고 원고와 같은 비법인 사단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가령 원고와 같은 비법인 사단 등 단체가 '국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단체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에 의하여 의제된 권리주체이므로 자연인과는 달리 그 단체의 목적, 구성 및 활동내역 등에 비추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만 당사자적격이 있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원고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우리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보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6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모든 자가 포함되며 이에는 비단 자연인 뿐만이 아니라 공·사법인, 그리고 법인격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모든 종류의 단체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에서 본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면서 달리 정보공개의 청구를 위한 요건으로 당해 정보와 관련된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개인의 권리의 위해서 뿐 아니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도 행사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특히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구제"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도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원고는 각계각층의 국민들의 참여로 국가권력을 감시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참여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전화요금이라는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한 공기업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2.



기재의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법에서 규정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어 그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

(1) 피고는 또,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소정의 정부투자기관 내지 구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이 포함되고, 피고는 위 각 법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나, 한편 1997. 8. 28.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은 피고를 민영화추진 대상 기업으로 정하면서 피고를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법이 시행된 1997. 10. 1.부터는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어 더 이상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인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 (2)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보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구 같은 법 시행령 (1998. 12. 10. 대통령령 제15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특례)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제2조 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또는 제3호"로 본다.

구 같은 법 시행령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3.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 지급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과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1996. 3. 12. 총리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① 법 제47조 제2호 또는 제3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총무처장관은 연 1회 이상 별표에 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전이라도 삭제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5조관련])

| 구 분                         |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
|-----------------------------|---------------------------|
| 1. 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1) 한국은행<br>(19) 한국전기통신공사 |
|                             |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1996. 10. 17. 총리령 제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퇴직조기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① 법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2001.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조 (퇴직조기퇴직장해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①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 기관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연 1회 이상 별표 1에 추가하여야 할 기관이나 삭제하여야 할 기관의 유무를 조사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여야 할 기관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다만, 삭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전이라도 삭제사유가 발생된 달부터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한다.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5조관련])

| 구 분                     |                   | 연 금 지 급 정 지 대 상 기 관                            |  |
|-------------------------|-------------------|--|--|
| 1. 법 제47조<br>제2호의<br>기관 | 가. 정부<br>투자<br>기관 | (1)<br>  한국은행<br> <br> <br> (16)<br>  한국전기통신공사 |  |
|                         |                   |  |  |
|                         |                   |  |  |

####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업은 이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조 (목적) 이 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3) 위 각 법규정의 취지 및 내용과 특히 피고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민영화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97. 10. 1.부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공무원연금법상으로는 그 이후에도 매년 계속하여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으로 선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민영화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조속한 민영화를 위하여 이와 상충되는 정부투



자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제에서 피고를 제외시켜 민영화법의 적용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일 뿐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고유의 목적에 따라 피고를 그 법 소정의 정부투자기관으로 보고 규제하는 모든 경우를 배제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정보법 시행령 제2조 3호 소정의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인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보법 제2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정보법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정보법 시행령 제2조 3호가 정보법의 위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비록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광범위하게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지급정지대상기관 전부를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정보법 소정의 '공공기관'으로서 피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각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 4.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정보는 단순한 원가산출내역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법 소정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2. 기재 원가에 관한 정보는 경쟁시장에서 피고의 영업 및 투자활동, 사업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경쟁사업자에게 유용되는 등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 법령

정보법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다. 판단

(1)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 또는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별지 목록 2. 기재 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은 기본적으로 피고의 영업활동, 투자활동, 사업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그동안 피고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왔다고 보여지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 11.경까지는 국내통신시장을 사실상



독점하여 왔으나 1991. 12. 3. 국제전화사업부분에서 경쟁이 도입된 이래 1997. 10.경 3개 PCS사업자의 이동전화사업 개시를 계기로 경쟁관계가 이동전화사업자와 사이에까지 확대되어 현재 34개의 기간통신사업자와 사이에 경쟁관계에 있는 사실, 특히 1997. 10.경 3개 PCS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한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이동전화 선호경향에 의하여 시내전화, 시외전화를 불문하고 이동전화 이용율은 급격하게 증가한데 반하여 유선전화 이용율은 매년 약 14%씩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가입자수를 놓고 볼 때 1999.에 이미 이동전화가입자가 23,443,000명이 되어 유선전화가입자 21,250,000명을 앞지르는 상황에 이르게 된 사실, 한편 유선전화와 이동전화 사이의 접속량은 갈수록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통신사업자가 그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다른 통신사업자로부터 지불받는 접속통화료는 1999.의 경우 피고는 총매출액의 3.9%,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총매출액의 21.1%에 이를 정도로 그 비중이 큰 사실, 접속통화료는 접속원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되며 피고의 경우 접속원가는 시내전화 원가내역 등을 토대로 산정되는 사실, 그런데 접속통화료 산정문제는 통신사업자 사이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그 산정에 통신사업자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접속제공 사업자는 접속원가 등 그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정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검증을 받아 다른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접속통화료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영업상 비밀로서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의 최대주주는 정부이며 그 소유주식비율은 2001. 6. 1.경 57.9%이었으나, 피고는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따라 이미 그 수년 전부터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한 해외 투자 유치, 정부보유지분의 매각, 해외 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추



진하고 있고, 그 결과 2001. 7. 26. 현재 이미 그 소유주식비율이 40.148%로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시내전화 원가내역을 토대로 한 접속원가 등이 공인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고 있고 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되는 등으로 시내전화 원가내역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통신시장에서 34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접속통화료에 관하여 이들과 사이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어 있으며, 민영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서만 다른 경쟁통신사업자와 달리 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2. 기재 시내전화요금(기본료, 통화료)의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시내전화요금이라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해소와 공기업의 투명성 확보의 측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지 모르나, 그 반면에 피고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통신사업자에 의해 유용되어 피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쟁통신사업자에게 피고의 접속통화료 인하를 위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며, 역시 같은 이유로 민영화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등으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시내전화요금 산정방식 및 원가내역에 관한 정보는 정보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2002. 5. 14.

재판장 판사 이창구 \_\_\_\_\_

판사 김정학 \_\_\_\_\_

판사 이선희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02

## 목 록

(목록 삭제)